

의안번호	2208232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5.03.06.
추계번호	25C105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4조의3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	(제1항)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교육공무원의 직무 수행 적합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무규정
		(제5항) 제3항에 따라 휴직한 교육공무원이 복직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교육감은 위원회가 복직하려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복직 및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제3항에 따라 휴직을 명한 교육공무원의 재활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이하 “재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4조의3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명한 교육공무원의 재활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임
 - 현재 개별 시·도교육청 규칙에 근거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교육청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하고 있음
 - 부산, 경기, 충북교육청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부산, 세종, 경기, 충북 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¹⁾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편, 경북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교원 직무수행심의위원회를 교육청 규칙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음
 - * [참고자료 1] 시·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 [참고자료 2] 시·도교육청 질환교원 관련 위원회 심의 건수
 -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에 의해 시·도교육청 산하에 질병휴직위원회가 설치된 상태이며,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는 질병휴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도교육청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가 운영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가능함
- 안 제44조의3제1항은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동조 제4항은 휴직을 명한 교육공무원의 재활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정안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해당 센터를 신규 운영하는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3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한 교육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 및 질환교육공무원 재활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라 결정되는데, 위원회의 구성과 재활센터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기존에 운영되던 타 위원회와의 통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함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와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의 설치·운영비용임
 - 그러나, 안 제44조의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설치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따라 재정지출의 규모가 변동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기 곤란함
 - 참고로, 부산, 세종, 경기, 충북교육청은 이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대통령령에 규정될 위원 수, 위촉위원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재정지출의 규모가 크게 변동하므로 추가 재정소요의 산출이 어려움
 - 또한 안 제44조제4항은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 설치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재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해당 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기 곤란함
 -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 참고로, 유사 사업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연계기관²⁾을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심리상담,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마음선(先) 개인심리상담³⁾, 마음생(生)개인심리상담⁴⁾, 마음행(行) 개인심리상담 및 초기 치료비용 지원⁵⁾ 등을 실시하고 있고,

2) '24.9.1.기준, 상담기관 1,191개소, 심리치료기관 218개소가 운영 중임

3)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교원에 대하여 심리상담 8회(1회 50분) 지원

4)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지원이 시급하여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마음 건강 회복과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10회(1회 50분) 지원

5) 개인 심리상담 지원을 받은 교원 중 자살위험성을 보이는 교원에 대하여 추가 심리상담 5회와 정신건강 의학과 치료비용 5회(각 50만원 이내) 지원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온라인 심리 검사 이후 전문가 상담, 전문 치료 연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1] 시·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단위: 명)

지역	현원	내부위원	위촉위원
서울	13	4	9
부산	15	5	10
대구	10	4	6
인천	10	3	7
광주	11	4	7
대전	9	3	7
울산	10	4	6
세종	7	1	8
경기	9	4	5
강원	10	2	8
충북	7	3	4
충남	10	3	7
전북	12	5	7
전남	9	3	7
경북	9	3	6
경남	13	5	8
제주	9	4	5

주: 1. 부산, 세종, 경기, 충북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어 해당 위원회의 구성원임

2. 경북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교원 직무수행심의위원회의 구성원임

3. 위촉위원은 교육청별 구체사항에 차이는 있으나,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직단체 추천인, 학부 모단체 대표 등이 해당함

자료: 각 시·도교육청

[참고자료 2] 시·도교육청 질환교원 관련 위원회 심의 건수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	합계
서울	—	2	5	7
부산	—	1	—	1
대구	—	—	—	0
인천	2	2	9	13
광주	—	—	—	0
대전	—	—	—	0
울산	—	1	2	3
세종	—	—	—	0
경기	—	2	3	5
강원	—	—	—	0
충북	—	1	6	7
충남	—	3	3	6
전북	2	3	3	8
전남	—	—	1	1
경북	—	2	8	10
경남	—	—	1	1
제주	—	3	—	3
합계	4	20	41	65

주: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질병휴직위원회 심의 건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교육부